

1. 개정이유

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(법률 제19047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)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서식 신설
(안 별지 제48호의2서식, 별지 제48호의3서식, 별지 제94호의2서식 및 별지 제94호의3서식)
- 나.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근거 규정 삭제(별표4, 별표11)
- 다.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
(별표8, 별표16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전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 제목“(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”을“(측량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8호의2 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44조제4항 및 제99조제4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”이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.

③ 영 제44조제7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”은 별지 제48호의3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말한다.

제108조의 제목“(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”을“(성능검사대행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)”으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.

② 영 제99조제7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”은 별지 제94호의3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말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별표 8 제2호의 지엔에스에스 (GNSS)수신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엔에스에스 (GNSS)수신기

별표 9 중 “GPS”를 “지엔에스에스(GNSS)”로 한다.

별표 11을 삭제한다.

별표 16 제5호의 지엔에스에스 (GNSS)수신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엔에스에스 (GNSS)수신기

별지 제48호의2서식, 별지 제48호의3서식, 별지 제94호의2서식 및 별지 제94호의3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과징금납부통지서

(수납기관 보관용)

①발 행 번 호		
② 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③위 반 일 자		
④위 반 행 위		
⑤납 부 금 액		
⑥납 부 기 한		
⑦수 납 기 관		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시·도지사 대도시 시장 [인] 수납인		

과징금영수필통지서

(국토지리정보원장·시·도·대도시 시장 보관용)

①발 행 번 호		
② 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③위 반 일 자		
④위 반 행 위		
⑤납 부 금 액		
⑥납 부 기 한		
⑦수 납 기 관		
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국토지리정보원장 시·도지사 대도시 시장 [인] 수납인		

과징금납부영수증

(납부자 보관용)

①발 행 번 호		
② 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③위 반 일 자		
④위 반 행 위		
⑤납 부 금 액		
⑥납 부 기 한		
⑦수 납 기 관		
위와 같이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국토지리정보원장 시·도지사 대도시 시장 [인] 수납인		

과징금

[] 납부기한 연장

[] 분할 납부

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신청인	성명		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전화번호	
과징금 부과내 용	납부통지서 발행번호				
	과징금 부과금액				
	납부기한				
신청 사유					
신청 내용				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의
[] 납부기한 연장을
[]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지리정보원장

시·도지사 귀하

대도시 시장

붙임 서류	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	수수료 없 음			
처 리 절 차						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통보
신청인		처리기관: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시·도지사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과징금납부통지서
(수납기관 보관용)

①발 행 번 호		
② 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③위 반 일 자		
④위 반 행 위		
⑤납 부 금 액		
⑥납 부 기 한		
⑦수 납 기 관		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수납인 시·도지사 [인]		

과징금영수필통지서
(시·도 보관용)

①발 행 번 호		
② 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③위 반 일 자		
④위 반 행 위		
⑤납 부 금 액		
⑥납 부 기 한		
⑦수 납 기 관		
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수납인 시·도지사 [인]		

과징금납부영수증
(납부자 보관용)

①발 행 번 호		
② 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③위 반 일 자		
④위 반 행 위		
⑤납 부 금 액		
⑥납 부 기 한		
⑦수 납 기 관		
위와 같이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수납인 시·도지사 [인]		

과징금

[] 납부기한 연장

[] 분할 납부

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신청인	성명		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전화번호	
과징금 부과내 용	납부통지서 발행번호				
	과징금 부과금액				
	납부기한				
신청 사유					
신청 내용				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[]납부기한 연장, []분할 납부를(을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붙임 서류	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	수수료 없 음			
처 리 절 차						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통보
신청인			처리기관: 시·도지사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3조(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신 설> <신 설>	제53조(측량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)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8호의2 서식에 따른다. ② 영 제44조제4항 및 제99조제4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”이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. ③ 영 제44조제7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”은 별지 제48호의3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말한다.
제108조(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. <신 설>	제108조(성능검사대행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) ①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. ② 영 제99조제7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”은 별지 제94호의3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말한다.